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63
----------	------

제출년월일 : 2006. 2.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 수가와 종목을 조정, 정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수료 및 진료비의 “별표” 내용을 일부 개정 (안 제2조제2항)

가.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중

- 근로자 건강진단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특별진단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발급 사항을 삭제
- 건강진단서와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신고에 부속의료기관 개설 사항을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 지침, 질병관리본부 결핵관리 지침

나. 예산조치 : 비 예산사업

다.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소의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표」”를 “별표”로 하며, 동항제5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종합병원 제외)

다.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라.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안마시술소 포함)

마.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마시술소 포함)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치아홈메우기

제3조제1항중 “의료급여법시행령”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진료비”를 “진료비(본인부담금)”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서울특별시종로구”를 “구”로 하며,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결핵사업을 위한 장비 및 재료 등의 구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가. 일반진단서(소견서)	1통	500원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 정한 수수료액
	나.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다.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라. 건강진단서	1통	1,500원	
	마. 재발급	1통	750원	
	바. 의료기록(X-선필름) 사본발급	장 (14×14인치)	3,000원	
2. 항결핵제 보 급	(생 략)			
3. 유료접종	가. 일본뇌염	1인분	유료접종수수는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 액은 1원 이상 49 원 이내의 경우에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인 용이 것에 한 한
	나. B형 간염 (임시에방 접종)	1인분		
	다. 장티푸스	경구용 1인분 또는 주사제 0.5ml		
	라. 유행성 출혈열	1인분		
4. 검사	가.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 에 준한다.	인 용이 것에 한 한
	나. 암표지자 검사	1건당	9,000원	
5.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가. (생 략)			
	나.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제외)	1건당	30,000원	
	다.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당	10,000원	
	라.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안마시술소포함)	1건당	20,000원	
	마.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마시술소포함)	1건당	10,000원	
	바. ~ 카. (생 략)			
6. 치아홈 메우기	치면열구전색진료	1회	보건복지부 구강보 건사업지침에 의한 수수료액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이하 “ <u>구</u> ”라 한다) 보건소의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비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
②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② ----- 별표-----.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5. 의료기관개설허가 등 가. (생략)	5. 의료기관개설허가 등 가. (현행과 같음)
나. 의료기관개설허가 (병원)	나. <u>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종합병원 제외)</u>
다. <u>의료기관 허가변경사항 (이전, 명칭, 구조)</u>	다. <u>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u>
라. <u>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u>	라. <u>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안마시술소 포함)</u>
마. <u>의료기관 신고사항변경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u>	마. <u>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u>
바.~카. (생략)	바.~카. (현행과 같음)
6. <u>치과진료</u>	6. <u>치아홈메우기</u>

현행	개정안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5. (생략)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종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7. (생략)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 -----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진료비(본인부담금)----- ----- 1.~5. (현행과 같음) 6. ----- 구 -----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세입재활용) (생략) 1. (생략) 2. 결핵 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4. (생략)	제4조(세입재활용)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결핵사업을 위한 장비 및 재료 등의 구입 3.~4.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별표)

현행					개정안				
구분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구분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1. 신장진단 및 진단 시, 제증명	가.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심해진단용	1. -----	〈삭 제〉			
	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원			〈삭 제〉			
	다. 일반진단서	1통	500원			가. (소견서) 〈삭 제〉	1통	500원	
	라.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나. -----			
	미. 시체검안서	1통	5,000원			다.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액	1통		
	바. 설비 및 연 렬 감철서	1통	2,000원			라. 건강진단서	1통	1,500원	
	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액	1통				마. 세발금	1통	750원	
	〈신 설〉					비. -----			
	〈신 설〉					2. -----			
	아. 의료기록 (X-선필름) 사본발급	장 (14×14 인치)	3,000원			(현행과 같음)			
2. 형적예제 발급	(생략)				3. -----	가. ~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유료 검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3. 유료검종	가. 일본뇌염	1인분	보진소사의 유료 검종 수수료는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B형간염 (임시예방접종)	1인분		
	다. 장티푸스	경구용 1인분 또는 주사제				마. 유행성 출혈열	0.5ml		
	마. 인플루엔자	1인분	3,000원			마. 인플루엔자	1인분	〈삭 제〉	

현행					개정안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4. 심사	가. 간접경사	1회	위생물야 종사자 들 의 건강진 단규칙 제 10조에 서 규정한 수 료액	인·허가용 이 아닌 것 에 한한다.	4.----	(삭제)			
	나. 수검경사	1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 구원 검사수 가에 준한다			가.----			
	다. 양표지지 경사	1건당	9,000원			나.----			
5.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 (별원)	1건당	30,000원			나. 의료기관, 부속의료기 관개설 허 가 (종합병 원제외)			
	다. 의료기관 허가변경 사항(의전, 명칭, 구조)	1건당	10,000원			다. 의료기관, 부속의료기 관개설 허가 사항 변경허 가			
	라.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 한의 원, 치과의 원)	1건당	20,000원		5. -	라. 의료기관, 부속의료기 관개설신 고 (안마식 술소 포함)			
	마.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 (의원 한의원, 치 과의원)	1건당	10,000원			마. 의료기관, 부속의료기 관개설신 고사항 변 경신고(안 마식, 술소 포함)			
	바. ~ 카. (생략)					바. ~ 카. (현행과 같음)	같은		
6. 치과신료	치면열구전색 신료	1회	3,300원		6. 치아용 배우기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 업 지침에 의한 수수료 액	